

보 도 해 명 자 료 (13. 11. 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정부 ‘해외진출기업’ 노동·인권 문제 외면” 기사에
대한 입장 (13.11.4, 한겨레)

1. 기사 내용

- ☐ 산업부가 지난 9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(NCP) 운영규정을 개정하며 사무국 업무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임
 -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44개국 중 어느 곳도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
 - 이는 가이드라인 위반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등의 중요한 일을 민간기관에 떠넘기는 등 OECD 가입국 의무를 사실상 외면하는 것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NCP를 운영하는 44개국 중 어느 곳도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 - 오히려 NCP 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노르웨이·네덜란드·덴마크 등의 국가는 NCP 자체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·운영하고 있음
- ☐ 금번 산업부의 운영 규정 개편은 사무소(NCP)의 기능을 강화하여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

- 첫째, NCP를 정부부처 중심에서 정부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하여, 가이드라인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함
- 둘째, 그간 사무국이 행해오던 가이드라인 위반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사무소가 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사무국의 기능을 사전조사 및 가이드라인 홍보 등으로 축소하고, 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함
- 셋째, 사무소와 사무국을 분리하여 사무국 기능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위임함으로써, 사전조사 및 가이드라인 홍보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함

※ 관련 문의 : 해외투자과 송요한 과장(02-2110-5109), 고승진 사무관(5377)